

병역판정전담의사 의무복무명령서

복무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	계급	군번
명령내역	근무기관	
	근무분야	
	근무기간	

「병역법」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위와 같이 병역판정신체
검사 업무에 의무복무할 것을 명합니다.

년 월 일

병 무 청 장

직인